



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공무  
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  
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
으로 한다.

제2조(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) ①상시출장을  
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 
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  
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 
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 
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  
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  
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에  
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 
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  
하지 아니한다.

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지급한도액등 기  
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마  
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 
정한다.

제3조(국내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국내  
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 
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(이하, 이조에서  
“규정”이라 한다)을 준용하되, 규정을  
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규정 제8조제1항·제3항 및 제16조제3  
항의 단서중 “소속 장관”은 각각 “구  
청장”으로 본다.
2. 규정 제8조제3항중 “재정경제원장관 및  
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제16조제3항  
단서중 “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 
것으로 본다.
3.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“관용차량관  
리규정 제4조”는 “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 
관리규칙 제3조”로, “동규정 제21조”는  
“동규칙 제17조”로 본다.
4. 규정 제24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5. 규정 [별표 1]의 “여비지급구분표”(이하,  
이호에서 “동표”라 한다)의 구분란  
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“연구직 및  
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”은  
“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  
에 관한 규정”으로 동표의 구분란 제3  
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“전문직 공무원  
규정”은 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”으로 동

표의 구분란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 
“공무원보수규정”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  
로 본다.

제4조(국외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국외  
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(이하,  
이조에서 “규정”이라 한다)을 준용하되,  
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의  
한다.

1. 규정 제8조제1항중 “소속장관”은 “구청  
장”으로 본다.
2. 규정 제9조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3. 규정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“소속  
장관”은 각각 “구청장”으로 본다.
4. 규정 제24조제1항 단서중 “국가공무원  
법 제71조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  
조제2항”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등위임조례중  
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6. 5. 11.  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  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4월 26일  
마포구청장 제출  
나. 회부일자 : 1996년 5월 3일  
다. 상정일자 : 제38회의회(임사회) 제1차 위  
원회(96.5.11.)상정, 질의토론,  
의결
2. 제안설명의 요지  
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문엽승  
가. 제출이유  
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 
열람 및 주민등록등·초본교부에 관한  
사항을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표의 열  
람 및 주민등록등·초본의 교부가 가능  
토록하여 구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표의  
열람 및 주민등록등·초본을 교부함으로  
써 주민등록사무를 민원편의 위주로 개  
선코자 함.  
나. 주요골자  
-조례 내용중 일부 미비점 보완·정비  
-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 
주민등록등·초본의 교부가 가능토록